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4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